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김위상 • 박충권 • 임이자

고동진 • 최은석 • 김승수

우재준 · 김선교 · 서범수

강선영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 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 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사업주는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고용 관런 편의시설의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	설치 등) <u>①</u>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	
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설치</u>	<u>사업주</u>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는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동부렁으로 정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세부내
	용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u>다.</u>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7조의2</u> 에 따라 화장실·식	1. <u>제7조의2제1항</u>
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